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39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윤영희 의원(1명)
찬 성 자: 곽향기, 김태수, 박성연,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이은림, 이종배, 최진혁,
황철규 의원(10명)

1. 제안이유

-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다. 적용범위(안 제4조)
- 라. 교육비 지원 및 중지 등(안 제5~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자녀 학생”이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3. “교육비”란 입학금,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4.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제5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금 및 수업료

2. 수익자부담경비

3.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 서 번 호

2023101600000022

미첨부 사유서 (2호)

요 청 인 : 윤영희의원

담 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박지영 주무관

접 수 일 : 2023.10.16.

회 신 일 : 2023.10.23.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교육비의 지원)를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 각 조항별 기추진사업은 추계에서 제외

(단위:천원)

관련조항	기추진 사업	예산액
제5조제1항제1호	- 학비지원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대상)	3,326,001
제5조제1항제2호	-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저소득층대상)	5,005,126
제5조제1항제3호	- 입학준비물품구입비 지원	40,532,636 17,268,000 ¹⁾

(2023년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예산서 참조)

※ 학년별 교육비 지원내용

급별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수익자 부담경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초	1	무상교육			무상급식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2					○	○	○
	3					○	○	○

(2023학년도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본계획 참조)

※ 참고자료로 기추진사업 주요내용 및 ‘2023학년도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본계획’, ‘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붙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1) 서울시 전입금

3. 미첨부 2호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현재 유치원·초·중고등학교까지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무상교육이 확대되었으며 수업료 등을 별도로 받은 학교(무상교육 제외학교)²⁾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도 일정 요건³⁾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학비 지원을 기 추진 중임
 - 따라서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학비는 1)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2)둘째 이후 학생이면서 3)저소득층이 아닌 학생에 대하여 발생하나 이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으므로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
 -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수익자부담경비 또한 기 지원 중인 저소득층을 제외한 다자녀 학생 수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
- ※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제3호 관련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 대상으로 기추진중이므로 추계에서 제외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박지영
	☎ 02-2180-7952
	e-mail : 7magic7@seoul.go.kr

2) 무상교육 제외학교 : 자사고, 외국어고, 예술고, 국제중, 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수업료 등을 별도로 받는 학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학생,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붙임 1】 기 추진사업 주요내용

☐ 학비지원

- 기간 : 2023. 1. ~ 12.
- 대상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외국어고, 예술고, 국제중, 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학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학생,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학습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소요예산 : 3,326,001천원

(2023년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예산서)

☐ 입학준비금

- 기간 : 2023. 1. ~ 12.
- 대상 : 2023학년도 초·중·고등, 특수, 각종학교 1학년 입학생
- 내용 : 2023학년도 입학준비금 1인당 초 20만원, 중·고 30만원 지원(213,000명)
- 소요예산 : 40,532,636천원 + 17,268,000천원(서울시 전입금)

(2023년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예산서)

☐ 수익자부담경비지원

- 기간 : 2023. 1. ~ 12.
- 대상 : 일반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중위소득 60%이하 학생,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 내용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 기숙사비
 - 앨범비 : 사회통합전형 실시 학교의 3학년 대상으로 전액 지원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1인당 400,000원 이내 → 5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 수련활동비 1인당 140,000원 이내 → 2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 소요예산 : 5,005,126천원

(2023년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예산서)

【붙임 2】 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청림 서울교육
혁신미래교육
정부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외국국적 유아, 저소득층, 특수 무상교육비 포함]

2023. 1.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가. 2023학년도 유아학비 주요 지원 내용

☐ 유아학비 지원 (외국국적 유아 포함)

구 분	2022년 계획	2023년 계획	비고
지원연령	- 만 5세: 2016. 1. 1.~2016.12.31. - 만 4세: 2017. 1. 1.~2017.12.31. - 만 3세: 2018. 1. 1.~2019. 2.28.	- 만 5세: 2017. 1. 1.~2017.12.31. - 만 4세: 2018. 1. 1.~2018.12.31. - 만 3세: 2019. 1. 1.~2020. 2.29.	
지원금액	- 공립: 150,000원 (방과후 포함) - 사립: 350,000원 (방과후 포함)	좌 동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구 분	2022년 계획	2023년 계획	비 고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좌 동	
지원금액	(교육과정) 월 최대 25.5만원 (방과후과정) 월 최대 8만원* * 수업료, 급간식비, 교재·재료비 지원	통합 월 최대 33.5만원	· 추가 학부모부담금(교육과정비+방과후 과정비+특성화활동비)이 33.5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유아학비 사립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 과정 7만원)과 별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추가 지원

구 분	2022년 계획	2023년 계획	비 고
지원대상	일반유치원에 재원하는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좌 동	
지원금액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교육과정) 월 최대 25.4만원 (방과후과정) 월 최대 8만원* * 수업료, 급간식비, 교재·재료비 지원	좌 동 통합 월 최대 33.4만원	· 추가 학부모부담금(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유아학비 공립 15만원(교육과정 10만원, 방과후 과정 5만원), 사립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 과정 7만원)과 별도 지원

I. 사업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를 지원하고, 공·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교육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 ※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입학 기회 보장

□ 지원내용

-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23.3.1.부터 적용)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만 5세	2017.1.1.~2017.12.31.	100,000	280,000	280,000
	만 4세	2018.1.1.~2018.12.31.			
	만 3세	2019.1.1.~2020. 2.29.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2017.1.1.~2020. 2.29.	50,000	70,000	70,000

※ 2023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3-3호, ’23. 1. 9.)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구분	자격	지원액(원/월)	비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월 최대 335,000	학부모부담금이 33.5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구분	자격	지원액(원/월)	비고
특수학급대상자 무상교육비	일반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공립) 월 최대 86,000 (사립) 월 최대 334,000	학부모부담금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지원신청 및 지급

◇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은 '23년 내 'e-유치원시스템'에서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으로 통합·운영될 예정

* 유아 교육 전주기와 유치원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 시작 이후('23년 9월)에는 'e-유치원 시스템'은 일몰되고,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의 교무 기능 및 유아학비 기능을 활용하여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처리

※ e-유치원시스템과 유치원 나이스 병행 운영 또는 통합·운영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구분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외국국적 유아학비	재원 중인 유치원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

-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유치원 입금
 -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지급 관련 유의사항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청구 및 정산은 분기에 한 번 실시
 - 시·도별 재정여건, 유아학비 지원 자격 정보 연계(행복e음→유아학비지원시스템) 지연, 유치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정산 결과와 실제 유아학비 지원액이 일치해야 함
 - **(외국국적 유아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자격 확인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자격을 보유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지원기간

-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 가능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II.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1. 유아학비

□ 지원대상 및 기간

-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0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에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취학대상 아동('16.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 취학 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참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제외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함)
 - ※ 단, 외국인 등록이 된 외국국적 유아의 경우 별도 지원 (계획 p.9 참조)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 해외체류기간 기산 시 출국일 포함
 - [예시] 3월 1일 출국하여 4월 7일 귀국한 A아동의 자격은 3월 31일부터 중지 (3월 30일까지 지원 자격 보유)
-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 (지원 기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3년 초과 유아는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처리
 - ※ 조기입학 유아의 경우, 사전에 무상교육 기간(3년)에 대해 반드시 안내
 -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지원기준

- 신규 신청 :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 ‘유아학비 ↔ 보육료’ 간 변경

변경 구분	지원 기준
보육료 → 유아학비	유아학비 신청 후 입학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입학일보다 신청일이 늦을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 보육료	보육료 신청전일까지 유아학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유아학비 ↔ 양육수당’ 간 변경

① ‘양육수당 →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기준	지원 기준
변경 신청일	15일 이내
	16일 이후
	① 양육수당 : 해당 월 미지원 ②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입학일이 신청일보다 늦은 경우 입학일을 변경신청일로 봄)
	① 양육수당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② 유아학비 : 익월 1일부터 지원

②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기준	지원 기준
변경 신청일	15일 이내
	16일 이후
	① 유아학비 : 해당 월 미지원 ② 양육수당 : 해당 월 전액 지원
	①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② 양육수당 : 해당 월 미지원(익월 1일부터 지원) ※ 유아가 유치원에 학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유아학비 일부가 미지급되므로, 반드시 학적 중단(자퇴, 퇴원) 후 변경 신청하도록 학부모 안내

※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보건복지부, 2023 보육사업안내 p.328, '23. 1. 5.)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

□ 지원금 산정

【 공통기준 】

-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세부 사항은 아래 세부 기준을 따름(소급지원 불가)
- 본 계획의 '**교육일수***'는 **지원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유치원생활 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의 '**수업일수****'와 다름

* (교육일수)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

** (수업일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 총 출석해야 할 일수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관련)

-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① ~ ③에 의해 산정

❖ 휴일에 대한 교육인정일 산정 기준 ❖

※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재량휴업일**을 의미함. 단, 휴일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수업일수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예: 토요일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평일과 동일하게 봄)

■ 휴일 전·후 출석여부에 따라 휴일에 대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휴일의 전후 모두 결석일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미인정**

⇒ 휴일의 전후 중 하루라도 평일 출석 시,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 휴일 전후 교육일수 인정 특례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이 되는 경우에도 휴일은 교육일수로 인정가능
(예: 휴일 전날 출석인정결석 + 휴일 다음날 결석인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휴일 전후 모두 출석인정결석인 경우 휴일 교육일수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휴일 전후 평일 출석과 관계없이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단,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 월의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 첫 번째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월의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마지막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중도 입·퇴원 유아의 경우, 유아학비시스템 상 입·퇴원일은 주말로 설정 불가 (월초·월말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유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말 설정 가능)

※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자동으로 입·퇴원일 조정

- ① 입학 시 : 입학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산정(일할계산)하되, 자격 신청일을 고려하여 결정

- 유아학비 자격을 **3월 1일까지** 신청하고, 유치원 개학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경우,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산정

※ 단, 유치원 개학일이 3월 15일 이후일 경우에는 개학일부터 지원금 산정

- 입학일보다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자격 신청일을 입학일로 봄
- 개학일 이후 중간 입학한 경우, 실제 입학일 기준으로 산정

❖ 입학에 따른 교육일수 산정 예시 ❖

유치원 개학일	유아 입학일	자격 신청일	지원 시작일	
3월 3일	3월 3일	3월 1일	3월 1일	(입학1)
	3월 3일	3월 3일	3월 3일	
	3월 15일	3월 18일	3월 18일	(입학2)
3월 22일	3월 22일	3월 1일	3월 22일	(입학3)

- 1) 3월 1일까지 자격을 신청하고, 개학일(3월 3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 280,000원(입학일 3월 1일 적용)
- 2) 3월 15일에 중간 입학하고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유아의 3월 지원액 ⇒ 280,000원 × 14(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126,450원
- 3) 3월 1일까지 자격을 신청하고, 개학일(3월 22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 280,000원 × 10(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90,320원

- ② 학기 중 :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 및 결석으로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단, '붙임 1'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일수로 인정)

※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

- 방학 중 지원금 산정 시, 공립유치원은 학기 중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립유치원은 방학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

❖ 학기 중 유아학비 산정예시 ❖

- (학기) 3월 15일 ~ 4월 12일까지 결석한 유아의 3~4월 유아학비 지원액
⇒ 3월 지원액 : 280,000원 × 14(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126,450원
⇒ 4월 지원액 : 280,000원 전액(교육일수 15일 이상)
- (방학) 8월 4일 ~ 8월 25일까지 방학기간인 유아의 8월 유아학비 지원액
⇒ (국·공립) 지원액 : 100,000원 × 9(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29,030원
⇒ (국·공립 방학 기간 모두 방과후 신청+출석한 유아) 100,000원(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
⇒ (사립) 280,000원(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

- ③ 퇴원 시 : 퇴원한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 산정(일할계산)

※ 유치원 퇴원(학적중단) 전에 자격 변경신청 시 신청 일자부터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되어 유아학비 지원이 불가함(유치원 퇴원 후 자격 변경 신청토록 학부모 안내 철저)

- 단, 유치원 연간 학사일정에 따른 졸업 시(만 5세반), 학기 중과 동일하게 교육일수 산정

❖ 퇴원 시 산정예시 ❖

(퇴원)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 중이며 6월 25일에 퇴원한 유아의 지원액
 ⇒ 지원액 : 280,000원 × 25(교육일수) / 30(해당월의 일수) = 233,330원
 (졸업) 2월 15일에 졸업한 유아의 2월 지원액 ⇒ 280,000원(교육일수 15일 이상)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 유아학비(교육과정비)에서 방과후 과정비 지급 불가가 원칙이나, **방과후 과정의 교재·교구비와 간식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잔액으로 집행 가능(유치원 지도점검 시 확인)

□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 '22년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23년도 유아학비 지원 가능

❖ 유의사항 ❖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고,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 자격결정 : 대상자의 출생 연·월·일 및 신청자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자격 생성 (지자체 담당 공무원)
- 청구 : 전자카드*를 통한 지원 대상자 인증 및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3·6·9·12월) (유치원)
- *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아이즐거웁카드(현금카드 사용 불가), 아이사랑카드'
- 지원 : 유치원 청구내역 확인·승인 및 지원금 입금 (교육(지원)청)
- ※ 학부모, 전자카드 등을 통해 지원 금액 확인

- **출결관리** :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에 대한 출결 상황 등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 (유치원)

* 유치원은 매일 유아의 출결상황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행복e음' 미연동(자격 미신청) 유아의 경우 반드시 학부모에게 자격 신청 안내

- **정산** : 유아별 입학·퇴원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매분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정산(6·9·12월 및 다음연도 2월) (유치원)

* 유아의 실제 출결상황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2. 방과후 과정비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유아교육법 제12조·제13조)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법 제2조)

□ 지원기준

-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

- 단, 보호자의 동의 하에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 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 가능

*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 조정 가능

※ 유치원 운영(개방) 시간은 학부모 의견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정하며, 특히, 부모의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19시 30분 이후까지 연장 운영 적극 권장

-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가 **1일 기준시간(8시간 또는 조건 충족 시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 단, **재량휴업일·방학·졸업 이후** 교육과정 시간(09:00~14:00)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고, 이는 해당 방과후 과정비로 사용가능하며 기준시간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부담금 징수 불가

-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해 **방과후 과정 출석부, 참여**

신청서 등 증빙 서류 구비 필수

☐ **지원금 산정**

-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방법과 동일

☐ **지원 내용**

-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기타사항**

-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23학년도 유치원 교육 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에 따름

Ⅲ. 외국국적 유아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 **지원목적 및 근거**

- **(목적)** 서울지역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차별없는 교육기회 제공
- **(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2

☐ **지원대상 및 기간**

-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만 3~5세 유아
 - '20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에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등록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 **(신청 기간)** 유치원 입학 시 신청 (재원생 포함)
-

❖ 지원제외 ❖

- 외국인(거소)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지원 제외 (유치원에서 반기 1회 확인)
 - 지원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이므로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도 동일한 기준 적용)
-

□ 지원금 산정 및 지급

-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항목, 지원내용은 한국 국적 유아 대상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포함)와 동일
- ※ 단, 지원금 산정 시, 퇴원 또는 졸업 여부와 무관하게 학기 중 산정방식(월 교육일수 15일 이상 전액 지원, 15일 미만 일할 계산)을 따름

□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외국인 등록*이 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필요 (단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진 경우 신고증과 국내거소사실증명 要)
- 지원 : 유치원 신청 내역 확인 및 지원금 입금 (교육지원청)
- 출결관리 :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출결 상황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 (유치원)
- * 유치원은 매일 유아의 출결상황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
- 정산 : 유아별 입학·퇴원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매분기 정산
- * 실제 원아의 출결상황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유의사항 ❖

- 외국국적 유아도 반드시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출결관리
- 정산은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출결을 토대로 진행

□ 업무처리 세부 절차

학부모(보호자)	· 유치원에 방문하여 외국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 신청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단,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진 경우, 신고증과 국내거소사실증명 제출) ※ 증명서는 발급된 지 30일 이내 서류만 인정 (유치원 반드시 확인)
↓	
유치원장	· 학부모 신청을 받아 유치원이 신청 ·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에 외국국적 유아 등록 및 출결 관리 · 신청 이후 다음 분기 시작월 10일 전후 신청 유아의 이전 분기 출결을 반영한 청구서(정산 포함) 제출 ※ 최초 신청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지원청으로 제출
↓	
교육지원청	· 유치원의 신청분 취합 후 본청 제출 · 신청 유아의 분기별 출결 반영된 정산내역 취합 후 제출
↓	
본청	· 분기 시작월 15일 전후 당해분기 지급액 최종 결정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전분기 정산 및 다음분기 지급액 결정) · 교육지원청에 산출된 소요예산 재배정(분기별)
↓	
교육지원청	· 재배정한 예산을 유치원에 교부(집행)

□ [공립유] 기타사항 [공립유치원 수업료·입학금 징수 처리 관련]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장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음
- ※ 면제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업료·입학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별도 납부하여야 함

IV.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 조기 입학 및 취학 유예 등 그밖에 지원 대상 포함

【 법정 저소득층 유형 및 기준 】

구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을 보유한 경우
차상위 계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대상 자격(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을 보유한 경우
한부모 가정	유아학비 지원 자격 유아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인 경우

- 지원 연령 및 기간, 보육료·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지원, 지원 제외 대상 등은 기존 유아학비 기준과 동일(p.3~5 참조)

❖ 유의사항 ❖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규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
- 다만, '22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23년도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지원 금액 및 산정방식

- 학부모부담금 월 최대 33만 5천원(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 유치원 원비에 대한 추가 학부모부담금이 33만 5천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 ※ 지도·점검 시 확인
- 실제 소요경비를 넘는 금액을 신청하지 않도록 유치원에 안내 철저

-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소급지원 불가), 지원금 산정은 유아학비와 동일하게 '교육일수'에 따름(p.5~6 참조)

□ 지원절차

- **보호자 신청** :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붙임5]
- 신청자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 (필요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8]
- **자격확인**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 신청자, 지원 대상 유아의 출생 연·월·일,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 여부(국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해당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 **청구**: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금액 신청(3·6·9·12월) (유치원)
- **지원**: 유치원 청구내역 확인·승인 및 지원금 입금 (교육(지원)청)
- **출결 관리**: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의 출결 상황 등을 유아학비 지원시스템으로 관리*(유아학비와 동일)
* 유아의 실제 출결 상황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결 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정산**: 유아별 입학·퇴원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정산(6·9·12월 및 다음연도 2월) (유치원)

V.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유아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일반유치원****에 재원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
 - ※ 조기 입학 및 취학 유예 등 그밖에 지원 대상을 포함하며, 유아학비 지원 상한 기간(3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대상에 포함
 -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와 중복 지원 불가
(자격 중복 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으로 우선 신청 안내)
- * 유아특수교육기관: 특수학교 유치원,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유아특수학교
- ** 일반유치원: 공립유치원(병설, 단설) 일반학급 및 사립유치원 일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는 **유아학비와는 별도** 지원되는 금액이므로, **유아학비 지원자격을** 보유한 경우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및 학부모 사전 안내

□ 지원 금액 및 산정방식

구 분	유아학비(A)	무상교육비 지원(B)	월 지원 상한액(A+B)
공립	15만원 (방과후 과정비 포함)	월 8만 6천원	최대 23만 6천원
사립	35만원 (방과후 과정비 포함)	월 33만 4천원	최대 68만 4천원

-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 및 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실제 학부모부담금 소요경비**를 신청 (방과후 과정 소요경비 포함)
 - * 신청금액 중 유아학비는 유아학비시스템을 통해 산정되므로 신청 제외
- 유치원 원비에 대한 추가 학부모부담금이 기준 금액(공립 8만 6천원, 사립 33만 4천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원칙
 - **실제 소요경비**를 넘는 금액을 신청하지 않도록 **유치원에 안내** 철저
 - 단, 학부모부담금이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보다 적은 경우, **일반유아와 구별되는 교육서비스 제공 경비***는 별도 지원 가능
- * 특수교육대상 유아 전용 교재·교구 지원 등

□ 지원금 산정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해당유아 진단·평가 의뢰서(공문)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소급지원 가능)

□ 지원 절차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치원장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학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진단서, 유치원장 의견서 제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대상자 선정 및 배치(일반유치원 배치)
↓	
특수교육 대상유아를 배치 받은 유치원장	· 해당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신청서 제출 ※ 공문 신청 시 <u>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설정</u>
↓	
교육지원청	· 유치원이 제출한 무상교육비 지원신청서를 수합하여 본청으로 소요예산액 신청(분기별)
↓	
본청	· 교육지원청에 소요예산 재배정(분기별)
↓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배치한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분기별)

VI. 행정[협조] 사항

□ 교육지원청

◦ 자체 세부 지원계획 수립 및 상시 지도·점검체계 구축·운영

※ 타 복지서비스와의 중복 지원 및 부실한 출결관리로 인한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 입·퇴원 및 출결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단위 유치원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원 자격 등 홍보 강화

❖ 주요 안내사항 ❖

- 유아학비 지원 개요: 대상, 지원 단가, 신청·지원 절차 등 (소급지원 불가)
- 무상교육 기간(3년) 종료 시 유아학비 지원 중단

※ 설명회 등에 불참하여 안내받지 못한 경우, 유선 등으로 반드시 개별 안내

◦ 입학(신규 신청) 또는 타 복지서비스로 변경 신청 시(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 보호자의 유아학비 신청 지연 및 보육료 등으로 잘못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 시 유아학비 지원 신청 유무 반드시 확인·안내
-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전제로 지원하므로, 타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상실하면 지원이 중단됨을 사전 설명

◦ 유치원 유아의 학적중단(자퇴, 퇴학) 시 보육료 또는 가정 양육수당 신청 안내

◦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 대상자 등록·관리

- 행복e음 자격 미수신 유아의 경우 일반등록(예: 자격 미수신자*, 무상교육 기간 초과자 등), 직권등록(예: 후견인 보호자 등)으로 관리 가능

* 단, 일반등록 유아 중 행복e음 자격 미수신자의 경우 학부모에게 유아학비 신청 여부 확인을 반드시 실시(유아학비지원시스템 SMS 발송 기능 등 활용)

◦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에서 등록하는 유아 정보*는 유아의 생활기록부 및 방과후 과정 운영사항과 동일하게 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도로명 주소, 도로명 상세주소, 방과후 과정 여부,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보호자관계, 교육과정(학급구분, 학급명), 방과후 과정(학급구분, 학급명), 입학일, 방과후 과정 시작일, 방과후 과정 종료일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e-유치원에 등록하는 모든 유아·

보호자에 대해 **개인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의 의무화**
※ [붙임4], [붙임6] 관련. 단, 유아의 보호자가 동의서를 기 제출한 경우 생략

- 정부지원금 인상 확정 전 심의 또는 결정된 **유치원별 원비가 정부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가능**

※ [예시] 유치원 원비 34만원 < 정부지원금 35만원 ⇒ 35만원 전액 지원 가능

- **유아학비(교육과정비)와 방과후 과정비는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 편성**

※ 공립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사립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참조

-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는 **해당 학년도 내 전액 집행 원칙**

- 집행 잔액 발생 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및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학년도 유아의 직접 교육경비로 편성·우선 사용

□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

- **유아학비(저소득층 유아학비 포함) 신청 접수 및 자격 결정·중지 업무** 관련, 시청·구청 **보육담당 부서**의 적극 협조 요청

- 접수 시 유아의 보호자에게 유아의 유치원 입학·퇴원 여부 및 입학·퇴원 예정일 확인 등 실시하여 자격 책정 오류 방지

- 신속한 자격 결정·통지로 원활한 유아학비 청구·정산 업무 협조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행복e음 자격 미수신 유아를 대상으로 문자 발송 기능 등이 추가되어 자격 결정 지연 시 유치원 현장 및 학부모 불편 초래 해소

-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2021. 7. 16. 시행)*에 따른 전국 신청 건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지 관할 외 지역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접수 시 유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즉시 이관 **협조 요청** *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한 **통보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14일로 단축**

- 유아학비 부정수급 사전 차단을 위해 **31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 체류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즉시 처리

※ 자격 중지 처리 지연으로 유아학비 청구·정산 시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자격 중지 변동 알림 시 즉시 조치 협조 요청**

◦ 신청 및 통보 절차 등 학부모 안내 요청

구분	내용
신청 방법	■ 신규·변경(상실포함)대상자 : <u>신청</u> ■ 행복e음 연계 자격보유자(유아학비 자격 기(既) 보유자) : <u>신청제외</u> ■ 저소득층 유아학비 자격 기(既) 보유자 : <u>신청제외</u>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붙임5] ■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 확인(신분증 등) ■ (필요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8] * 유아의 사실상 보호자가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
자격 통보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 중지, 상실 등) 안내 ■ '행복e음' → 'e유치원'으로 자격정보 등 연계

【붙임 3】 2023학년도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본계획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정신
서울교육

2023학년도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본 계획



2023. 2.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2023학년도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본 계획

I. 추진 개요

1 추진 목적

- ☐ 저소득 가구 학생 교육비 지원을 통한 실질적 교육 기회 균등 제고

2 추진 근거

- ☐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교 육 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 교육급여는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 사업

3 추진 현황

1989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1998년	실직자 자녀 중·고교 학비 지원
2000년	저소득층 자녀 중·고교 학비, 교육정보화 지원
2007년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교육비 지원
2015년	7월 교육급여 사업 보건복지부 → 교육부 이관
2016년	학비, 급식비 지원 기준 확대(중위소득 52% ⇒ 6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금액 상향(연간 50만원 ⇒ 60만원)
2017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준 확대(중위소득 50% ⇒ 60%)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상한액 인상 및 초·중·고 동일 적용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특수학교 포함 지원
2018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60만원 소진 시 추가 지원 신설(+15만원)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횟수 확대(초·중·고 재학 중 6회 ⇒ 9회) 및 각종학교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기준 확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한부모보호대상자
2019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60만원 소진 시 추가 지원금 상향(+18만원) 수익자부담경비 초·중학생 지원 기준 확대(중위소득 50% ⇒ 60%) 교육정보화 지원 기준 확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난민인정자
2020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60만원 소진 시 추가 지원금 상향(+20만원)
2021년	무상교육 전면확대로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 대상 학비 지원 무상급식 전면확대로 무상급식 제외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 대상 급식비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기준 확대: 기존 +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2022년	학비 입학전형별 지원금액 차등 폐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준 확대(중위소득 60% ⇒ 70%)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전형별 지원금액 차등 폐지(기숙사비 및 앨범비 지원 한도 금액 폐지)

Ⅱ. 2022년 주요 실적

지원 항목			지원내역		
			학교수(교)	인원(명)	지원금액(천원)
교육 급여	교육활동지원비		1,333	38,927	18,629,585
	저소득층학습특별지원비		1,333	31,871	2,826,950
	교과서대		33	867	70,579
	입학금 및 수업료		33	1,015	5,932,857
교육비	학비	입학금 및 수업료	36	1,245	2,612,950
		학교운영지원비	32	1,095	802,858
	급식비	학기중 평일 중식비	10	237	201,489
		토공휴일 중식비	-	14,071	6,956,092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1,186	23,106	15,048,415
	인터넷통신비		1,296	17,330	3,658,672
	수익자부담경비		194	5,763	3,190,236

Ⅲ. 세부 추진 계획

1 전년 대비 주요 변동 사항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단가 상향

(교육부 고시 제2022-31호)

급별	2022년	2023년
초	331,000원	415,000원
중	466,000원	589,000원
고	554,000원	654,000원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 변경

2022년	2023년
개인 계좌 현금 지급	개인 신용/체크카드의 카드 포인트 바우처 지급

□ 교육비 대상 확대 및 단가 상향

항 목		2022년		2023년	
		지원 기준	금액	지원 기준	지원 금액
방과후자유수강권		중위소득 70% 이하	600,000원 *전액 소진 시 200,000원 추가지원	중위소득 80% 이하	600,000원 *전액 소진 시 200,000원 추가지원
수익자 부담	소규모데마형 교육여행비	중위소득 60% 이하	400,000원 한도	변동없음 (실비 지원)	500,000원 한도
	수련활동비		140,000원 한도		200,000원 한도
급식비	학기중 평일급식비	중위소득 60% 이하	(비급식일) 1식 7,000원	변동없음	(비급식일) 1식 8,000원

항 목		지원 내용(금액)		학년	지원 기준	지원 방법		
교육 급여	교육 활동 지원비	415,000원		초	교육급여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바우처 지급		
		589,000원		중				
		654,000원		고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전액		무상 교육 제외 학교		학교로 지급		
학교장 고지 금액		① 법정저소득 가구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② <u>중위소득 60% 이하</u> ③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학교로 지급					
학 비	입학금				학교장 고지금액 ⁴⁾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연 731,000원 한도 지원						
교육 비	급 식 비	(학기 중 평일 중식) 학교별 급식 단가 ※비급식일 지원(학기중 평일에 학생이 등교하지만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1식 8,000원		무상 급식 제외 학교	① 법정저소득 가구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② <u>중위소득 60% 이하</u> ③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④ 학교장 추천 대상자 ⁵⁾	학교로 지급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이내 *전액 소진 시 200,000원 추가 지원		초1 ~ 고3				
	교육정보화	가구별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초4 ~ 고3	① 법정저소득 가구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② <u>중위소득 80% 이하</u> ③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본청 →통신사 일괄 지급	
	수 익 자 부 담 경 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연 500,000원 한도 지원	사회통합 전형교			① 법정저소득 가구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② <u>중위소득 60% 이하</u> ③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학교로 지급
		수련활동비	연 200,000원 한도 지원					
		기숙사비	학교장 고지금액					
앨범비								

※ 무상교육, 무상급식 제외학교 전 학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4) 단, 각종·고등기술학교는 2020학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액 기준 지원(입학금 14,100원, 수업료 362,700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수업료는 2023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상한액(1,501,700원) 이내 지원

5)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추천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3 지원 개요

- 지원 기간
 -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자격을 보유하는 동안
 - 교 육 비: 2023. 3. ~ 2024. 2.(학년도)
 - ※ 교육정보화 예외: 2023. 6. ~ 2024. 5. (4~5월 중 대상자 선정에 의한 지원 기간 조정)
- 지원 대상 : 초, 중, 고등학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교육비 항목별 설정된 소득인정액 이하의 학생(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중위소득 80% 이하, 그 외 교육비는 중위소득 60% 이하) 등
- 지원 항목
 - 교육급여(3종):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교 육 비(5종):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수익자부담경비

4 항목별 지원 내용

가. 교육급여

-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주요 변동 사항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보장 수준 강화 : 초등학생(331천 원→415천 원), 중학생(466천 원→589천 원), 고등학생(554천 원→654천 원)
 - 지급방식 변경: (기존) 현금 지급 → (변경*) 카드포인트 바우처 지급

* 교육부의 「교육급여 지급방식 개편(안 기본계획」 알림(22.8.19),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 시행계획(복권기금장학부-3055)에 근거하여 제도 취지에 맞는 교육급여 사용을 장려할 목적으로 전국 공통 변경 시행

- 참고 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보장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지원 예산을 국가, 교육청, 시, 구에서 차등 분담(‘Ⅳ. 예산 현황’ 참조)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명)

연도	최종 예산(A)	집행액(B)	불용액(A-B)(%)	지원 인원
2020	28,407,299	27,154,795	1,252,504 (4.4)	45,730
2021	25,061,745	23,164,632	1,897,113 (7.6)	41,873
2022	27,517,153	24,638,241	2,878,912 (10.5)	38,927

나. 교육비

4대 교육비*(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통) 및 수익자부담경비, 총 5종 지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1. 학비

○ 내용

-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 고지금액, 학교운영지원비: 연 731,000원

* 각종·고등 기술학교는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액 기준, 학평은 학습비 상한액 이내 지원

○ 참고 사항

- 교육급여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입학금·수업료는 교육급여로 지원)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명)

연도	최종 예산(A)	집행액(B)	불용액(A-B) (%)	지원 인원
2020	8,060,880	8,060,880	0 (0.0)	8,454
2021	2,649,253	2,609,089	40,164 (1.5)	1,332
2022	3,518,738	3,415,808	102,930 (2.9)	1,025

2. 급식비

○ 내용

- 학기중 평일 중식(급식)비 전액(단, 비급식일 8,000원) 지원
-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로 무상급식 미실시 학교(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고등기술학교)에 학기 중 평일 중식비 지원

○ 참고 사항

- 학교장 추천 비율 확대(2022~): 10%미만 → 15%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득감소가 발생 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코로나19로 인한 신(新)취약계층에 한함
 ※15% 초과할 경우 교육감(교육청) 승인 필요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명)

연도	최종 예산(A)	집행액(B)	불용액(A-B) (%)	지원 인원
2020	22,686,998	17,408,908	5,278,090 (23.3)	27,039
2021	224,088	163,858	60,230 (26.9)	232
2022	242,912	201,489	41,423 (17.0)	237

※2021년도부터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 미실시 학교만 지원하여 예산액과 지원인원 대폭 감소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내용
 -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연 60만원 지원
 -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수강 지원
- 주요 변동 사항: 지원대상자 확대(중위소득 70%이하 → **80%이하** 학생)
- 참고 사항: 60만원 모두 소진 시 **20만원 추가 지원**(최대 80만원)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명)

연도	최종 예산(A)	집행액(B)	불용액(A-B) (%)	지원 인원
2020	5,937,169	4,254,813	1,682,356 (28.3)	5,805
2021	12,038,598	11,398,330	640,268 (5.3)	18,591
2022	16,429,075	15,049,515	1,379,560 (8.4)	23,106

4. 교육 정보화

- 내용: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지원
- 참고 사항
 - 1가구(시설)당 1회선 지원, 협약요금제⁶⁾ 가입자만 지원
 - 본청에서 월별 일괄 정산하여 통신사에 요금 지급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명)

연도	최종 예산(A)	집행액(B)	불용액(A-B) (%)	지원 인원
2020	3,636,756	3,316,060	320,696 (8.8)	15,719
2021	3,900,506	3,900,296	210 (0)	18,602
2022	3,900,506	3,681,050	219,456 (5.6)	17,330

5. 수익자부담 경비

- 내용: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기숙사비, 앨범비 지원
- 지원 단가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500천원), 수련활동비(200천원)

6) 교육부에서 협약을 맺은 통신사(KT, SKB, SKT, LGU+)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협약을 맺은 통신사(딜라이브, SKB(구 'T브로드'), LG헬로비전(구 'C헬로'), 현대HCN, CMB)에서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요금제

- 기숙사비, 앨범비: 학교장 고지 금액(사회통합전형 실시교 지원)

○ 주요 변동 사항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지원 한도 확대

수익자부담경비			2022년	2023년
전체 초중고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초,중,고)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u>특별기여자</u> 또는 그 자녀	400,000원 한도 지원	500,000원 한도 지원
	수련 활동비		140,000원 한도 지원	200,000원 한도 지원

○ 참고 사항

- 기숙사비, 앨범비는 사회통합전형 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만 지원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명)

연도	최종 예산(A)	집행액(B)	불용액(A-B) (%)	지원 인원
2020	951,546	858,638	92,908 (9.7)	1,327
2021	666,253	666,249	4 (0)	1,714
2022	4,952,714	3,190,236	1,762,478 (35.5)	5,763

5 행정사항

□ 신청 절차



① (집중 신청기간) 2023. 3. 2. (목) ~ 3. 17. (금)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한 달(月)부터 지원

② (신청·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접수: <http://www.bokjiro.go.kr> 또는 <http://oneclick.moe.go.kr>

교육비 지원 신청이 연중 상시화됨에 따라, 법정 저소득 자격이 있는 학생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비 지원을 신청을 하여야 함

③ 소득·재산 조사 및 통보: 시·군·구청 통합조사팀

-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산출
-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교육청·학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④ 보장결정 및 대상자 선정(심사): 학교

(교육급여)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교육비) NEIS로 통보된 신청 학생의 ‘자격’ 및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교육비 항목별 대상자 선정

(이의 신청) 학부모 이의 신청 시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재산 재조사

□ 교육비 납부 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23년 심사 완료 시까지 교육비 납부 독촉 금지 및 CMS 계좌 인출 유예
- 신입생 예비소집 시, 법정자격 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학교로 제출하면 교육비 납부 유예됨
- * 고지 과정에서 학생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지원 절차

본청	⇨ 분기별 예산 재배정	교육지원청	⇨ 분기별 예산 교부	학교
	⇦ 분기별 예산 신청		⇦ 교육비 지원 소요예산 파악 지원대상자 지원금 처리	

□ 지원 방법

지원대상자 적정 관리	예산 집행 적정성 확보	교육비의 적기 지원
▶ 지원대상자 발굴 및 누락 방지 ▶ 교육비 지원 다중 자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 중복 수급 예방)	▶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교육비 지원 ▶ 소요 예산 산정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 신청·교부	▶ 지원대상자 확인 즉시 신속한 교육비 지원 ▶ 법정저소득 자격 학생에 대한 납입 유예로 가계 부담 해소

6

용어 설명

□ 소득인정액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91호, 2023.1.1.시행)

- 중위소득: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2023년 4인 가구 기준 5,400,964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2023 기준 중위소득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중위소득 50% 이하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중위소득 60% 이하	2,073,693원	2,660,890원	3,240,578원	3,798,413원
중위소득 80% 이하	2,764,924원	3,547,853원	4,320,771원	5,064,550원

□ 교육비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 대상 유형		근거 법령 및 내용
법정 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 일반 모·부자 가정과는 다르며, 신청에 의한 법정자격임
	법정차상위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 ☞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정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해당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교육비 항목별로 상이함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난민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홍보 및 연수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사업 홍보

- 본청: 홍보 자료 제작하여 자치구·교육지원청에 배부·온라인 홍보 실시
- 교육지원청·자치구: 관내 학교·주민센터에 홍보 자료 배부 및 민원실에 자료 비치
- 학교·주민센터: 학부모에게 교육비·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 안내 및 홍보

○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업무담당자 연수 운영

- 업무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권역별 연수 실시
- 학교 업무담당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현장 친화적 연수 실시

교육비	교육급여
연3회, 120명 (23년 5월 예정)	연6회, 180명 (23년 3, 9월 예정)

IV. 예산 현황

1 2023년 교육급여 보장비용 분담 현황

(단위: 천원)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				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대 ㉡				
기 준		분담주체	분담액	비율	기준	분담주체	분담액	비율
중위소득 40%이상~50%이하		교육청㉢	4,705,594	62.2%	전체	국가	13,918,860	60%
중위 소득 40% 미만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 미약	국가	1,717,850	22.7%		시	6,495,468	28%
		시	801,663	10.6%				
		구	343,570	4.5%				
		소계 ㉣	2,863,083	37.8%				
계		(㉢ + ㉣) 7,568,677		100%		23,198,100 100%		
합 계 (㉠+㉡)		30,766,777천 원						

※ 교육급여 결정통지를 위한 우편요금, 운영비, 업무추진비 69,384천원 제외

2 교육급여·교육비 예산 현황

※본예산 기준 (단위: 명, 천원)

항 목	2022년		2023년		증 감('23- '22)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교 육 급 여 (A)		28,630,700		30,836,161		2,205,461
교육 활동 지원 비	48,400	21,402,656	42,780	23,116,610	△5,620	1,713,954
교 과 서 대	1,034	97,196	916	81,490	△118	△15,706
입학금 및 수업료	1,096	7,121,488	1,184	7,568,677	88	447,189
운영비,업무추진비		9,360		69,384		60,024
교 육 비 (B)		23,543,426		31,023,024		7,479,598
학 비	1,416	3,381,026	1,321	3,326,001	△95	△55,025
급 식 비	232	196,880	239	209,600	7	12,720
방 과 후 학 교 자 유 수 강 권	59,267	13,175,826	56,398	18,581,791	△2,869	5,405,965
교 육 정 보 화 (인 터 넷 통 신 비)	18,463	3,900,506	18,463	3,900,506	-	-
수익자부담경비	2,177	2,889,188	9,512	5,005,126	7,335	2,115,938

항 목	2022년		2023년		증 감('23- '22)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합 계 (A + B)		52,174,126		61,859,185		9,685,059

※ 교육급여 = 국고+광역+기초+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 = 교육비특별회계 100%

V. 향후 일정

시 기	내 용	주 체
1월~2월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 수립 항목별 세부 지원 계획 수립	본청
2월~3월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사업 홍보	본청·교육지원청
3월	집중 신청 기간 운영 2023. 3. 2.(목) ~ 3. 17.(금)	모든 주민센터, 홈페이지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
4월	학교 업무담당자 연수 소득·재산 조사 및 조사 결과 NEIS 통보	본청·교육지원청 시·군·구청
5월	교육비 지원 대상자 심사 및 결과 통보 교육비 지원 실시 및 학부모의 기납부액 반환 처리 (신청월부터 소급 지원)	학교→학부모

붙임1. 교육비 지원 범위

◇ 학년별

급별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수익자 부담경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초	1	무상교육			무상급식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2					○	○	○
	3					○	○	○

※ 무상교육, 무상급식 제외학교 전 학년 교육비 지원

◇ 자격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인터넷통신비)	수익자 부담경비
법정 저소득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③ 법정차상위대상자	○	○	○	○	○
	④ 중위소득 60% 이하	○	○	○	○	○
	⑤ 중위소득 80% 이하	-	-		-	-
	⑥ 학교장 추천	-	○	-	-	-
	⑦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	○	○	○	○

◇ 학교 유형별

분류	세부 분류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인터넷통신비)	수익자 부담경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특수	특수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	○	○
고	일반고					○	○	○
	자율고/특목고	○	○	○		○	○	○
	방송통신고	면제	무상교육		-	-	○	○
각종 학교	외국인학교	-	-	-	-	-	-	-
	대안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	○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무상교육*			○	-	○	-

* 대안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중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는 학비 지원함

붙임2.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실시 학교

※ 구분별 학교명 가나다순

※ 자사고(21), 외국어고(6), 과학고(2), 국제고(1), 국제중(2), 마이스터고(4), 총 36개교

※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 전환(3학년은 자사고): 승문고(서부), 동성고(중부), 한가람고(강서양천)
2023학년도부터 일반고 전환(2,3학년은 자사고): 장훈고(남부)

연번	구 분	설 립	학 교 명	교육지원청
1	자사고	사립	경희고등학교	동부
2	자사고	사립	대광고등학교	동부
3	자사고	사립	동성고등학교(3학년)	중부
4	자사고	사립	배재고등학교	강동송파
5	자사고	사립	보인고등학교	강동송파
6	자사고	사립	선덕고등학교	북부
7	자사고	사립	세화고등학교	강남서초
8	자사고	사립	세화여자고등학교	강남서초
9	자사고	사립	송문고등학교(3학년)	서부
10	자사고	사립	신일고등학교	성북강북
11	자사고	사립	양정고등학교	강서양천
12	자사고	사립	이화여자고등학교	중부
13	자사고	사립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	서부
14	자사고	사립	장훈고등학교(2,3학년)	남부
15	자사고	사립	중동고등학교	강남서초
16	자사고	사립	중앙고등학교	중부
17	자사고	사립	하나고등학교	서부
18	자사고	사립	한가람고등학교(3학년)	강서양천
19	자사고	사립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성동광진
20	자사고	사립	현대고등학교	강남서초
21	자사고	사립	휘문고등학교	강남서초
22	외국어고	사립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성동광진
23	외국어고	사립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성북강북
24	외국어고	사립	명덕외국어고등학교	강서양천
25	외국어고	사립	서울외국어고등학교	북부
26	외국어고	사립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중부
27	외국어고	사립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강동송파
28	과학고	공립	세종과학고등학교	남부
29	과학고	공립	한성과학고등학교	서부
30	국제고	공립	서울국제고등학교	중부
31	국제중	사립	대원국제중학교	성동광진
32	국제중	사립	영훈국제중학교	성북강북
33	마이스터고	공립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성북강북
34	마이스터고	사립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동작관악
35	마이스터고	공립	서울로봇고등학교	강남서초
36	마이스터고	사립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강남서초